

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·가정 양립 지원사업 모음

www.work24.go.kr

문의 : 온라인(고용24) 또는 고용센터

관악고용센터(02-3282-9366)

근로자 지원

육아휴직

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,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

육아휴직급여
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매달 통상임금의 80%(최대 150만원) 지원
- * 일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및 사업장 복귀 후 지원

6+6 부모육아휴직제

-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6개월 동안 상향하여 지원
- * 최대 지원 금액 첫 1개월: 200만원, 2개월: 250만원, 3개월: 300만원, 4개월: 350만원, 5개월: 400만원, 6개월: 450만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간(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합산시 최대 2년)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* 단축 후 근로시간이 15~35시간이 되도록 단축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

주당 최초 10시간의
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의 **100% 지원**
(상한액 200만원)10시간을 초과하는
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의 **80% 지원**
(상한액 150만원)

출산전후휴가

-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로 90일의 휴가를 주되,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함

출산전후휴가급여

-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90일(대규모 기업 30일)간 210만원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

배우자 출산휴가

-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 청구 시 사업주는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

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(24년 상한액 401,910원)



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(정책)

육아휴직 지원금
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특례* 3개월 동안 월 200만원)
- * 만 12개월 이내(임신중 포함),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, 이후 월 30만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(기업의 1~3번째 사례는 월 40만원으로 지원 금액 인상)

대체인력 인건비 및 채용 알선 지원

대체인력지원금

- 출산전후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(인수인계 2개월, 월 120만원)

채용알선

- 출산휴가,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
- * <https://matchingbank.career.co.kr>

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(신설)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

유연근무 장려금 & 인프라 구축 지원

유연근무 장려금

- 유연근무(재택·선택·원격근무)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, 연 최대 360만원 지원
-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재택·원격, 선택근무 활용 시 10만원 추가 지원(30만원 → 40만원) 및 시차출퇴근 활용 시 월 최대 20만원(1년간) 지원

일·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

- 재택·원격근무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+보안시스템 투자비의 50% 지원 (최대 2천만원)
-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의 70% 지원 (최대 750만원)

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

소정근로시간단축지원금

-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

실근로시간단축지원금

-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(정책) 지원

사업주 지원

신입직원 직장적응 지원(청년성장프로젝트)

- 신입직원에게 조직내 성장 방법, 갈등 관리,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
- CEO, 인사관리자에게 청년세대 이해·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·컨설팅 제공
- *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/ 문의: (사)벤처기업협회 혁신인재팀 T.02.6331.7154

